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희승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1985
----------	-------

발의연월일 : 2025. 8. 5.

발 의 자 : 박희승 · 윤준병 · 김정호
안호영 · 정성호 · 김태년
전진숙 · 서영교 · 박홍배
서영석 · 이원택 · 이광희
김준혁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2020년 12월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선거일을 제외하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주체는 누구든지 전화나 말을 통한 선거운동이 가능해졌으나, 확성장치의 사용은 여전히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장소 또는 대담·토론회장에서 연설·대담·토론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할 수 없음.

확성장치는 후보자 간의 성량 차이를 조정하는 등 유권자에게 후보자의 정견 등을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는 보조적 장치로써 유권자의 알 권리와 선거운동의 공정성을 위해 필요한 측면이 있음.

그럼에도 제한된 인원을 대상으로 특정한 공간에서 이뤄지는 옥내확성기 사용을 규제하는 것은 선거운동의 자유를 위축시킬 뿐 아니라, 잦은 고소와 고발을 야기하고 있음.

또한 일정한 소음 기준 이내으로 확성장치 사용을 제한하여 소음으

로 인한 피해나 불편을 최소화하여 국민의 편익을 지키면서도 선거운동의 자유를 확대시킬 수 있음에도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

이에 말, 전화를 통한 선거운동과 같이 옥내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소음기준을 준수하며 확성장치를 사용하는 선거운동의 경우에도 선거일을 제외하고 상시 허용하여 선거운동의 자유를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59조 등).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제4호 중 “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를 “제6호에 따른 경우 이외의 확성장치 또는 휴대용 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후보자가 제79조제8항제2호에 따른 소음기준 이내의 범위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소음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옥내에 설치된 확성장치 또는 휴대용 확성장치를 사용하여 옥내에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제79조제7항을 삭제한다.

제91조제1항 중 “이 法의 規定에 의한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장소 또는 대담·토론회장에서 演說·對談·討論用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확성장치 또는 휴대용 확성장치를 사용하는 경우”로, “확성장치”를 “확성장치 또는 휴대용 확성장치”로 한다.

제256조제5항제8호 중 “제6항(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제7항”을 “제6항(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9조(선거운동기간) 선거운동은 선거기간개시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에 한하여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9조(선거운동기간) ----- ----- -----.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송 · 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에 한정하며,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 송신장치를 설치한 전화는 제외한다)를 이용하거나 말(<u>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옥외집회에서 다중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u>)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4. ----- ----- ----- ----- -----제6호에 따른 경우 이외의 <u>확성장치 또는 휴대용 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u> ----- ----- -----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u><신 설></u>	6. <u>후보자가 제79조제8항제2호에 따른 소음기준 이내의 범위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소음기준을 초</u>

제79조(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 ① ~ ⑥ (생략)

⑦ 후보자등은 다른 사람이 개최한 屋內모임에 일시적으로 참석하여 演說·對談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場所에 設置된 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휴대용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있다.

⑧ ~ ⑫ (생략)

第91條(擴聲裝置와 自動車 등의 사용제한) ① 누구든지 이 법의 規定에 의한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장소 또는 대담·토론회장에서 演說·對談·討論用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없다.

② ~ ④ (생략)

제256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 ① ~ ④ (생략)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과하지 아니하고 옥내에 설치된 확성장치 또는 휴대용 확성장치를 사용하여 옥내에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제79조(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 ① ~ ⑥ (현행과 같음)

<삭 제>

⑧ ~ ⑫ (현행과 같음)

第91條(擴聲裝置와 自動車 등의 사용제한) ① -----이 법의 規定에 의하여 확성장치 또는 휴대용 확성장치를 사용하는 경우-----
-----확성장치 또는 휴대용 확성장치-----
--.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256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해당하는 者는 1年 이하의 懲役 또는 200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1. ~ 7. (생략) 8. 제79조제1항·제3항부터 제5항까지·<u>제6항(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u>·<u>제7항을 위반하여 공개장소에서 연설·대답을 한 자</u> 9. ~ 12. (생략)	----- ----- -----. 1. ~ 7. (현행과 같음) 8. ----- -----<u>제6항(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u>----- ----- ----- 9. ~ 12. (현행과 같음)
--	---